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404
----------	------

2018. 04. 06.
도시계획관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 2. 28 김인제 의원 외 2인 공동발의

나. 회부일자 : 2018. 3. 5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8.4.6.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김인제 의원)

가. 제안이유

- 주거상황이 극히 불량하거나 적절한 주거를 영위하지 못할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독립적이고 안정된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자립과 자활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지원주택의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입주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지원주택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 지원주택의 공급 및 편의시설 설치, 제공기관 선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제9조)
-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위촉해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제16조)

3. 검토보고 요지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 제안배경

- 이 제정조례안은 임대주택과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2018년 2월 28일 김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3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

□ 제정의의

- 최근 우리사회는 경제성장과 주택의 양적 확충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되면서, 주거의 질과 주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그 결과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에 대한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정부는 ‘15.6월 주거관련 최상위 기본법인 「주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주거권¹⁾의 개념을 제도권내에

1)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도입하였으나, 주거취약자의 주거권 보장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주거취약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는 여전히 불비한 상태임.

○ 특히 노숙인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주거취약자의 경우 주거와 함께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에도, 그간 우리사회는 “시설수용과 보호” 정책에 치중한 결과 이들을 사회적 보호의 대상으로서가 아닌 격리수용 대상자로만 인식해온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은 님비현상으로 표면화되기도 하며, 사회복지시설의 과부족에 따른 주거취약자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수요증가를 유발하면서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내 학계 및 민간단체에서는 선진외국의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미국의 “Housing First”²⁾ 정책과 같이 주거지원서비스의 효과를 높이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음.

- 미국은 1987년 ‘매키니 홈리스 지원법’을 제정하며 노숙인 및 장애인, 저소득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을 시행해왔으며, 우선적 주택공급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시행을 통해 노숙 또는 시설로의 복귀 등을 방지하고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 (해외사례는 붙임 1 참조)

2) Housing First는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노숙 등 상태에 있는 가정에 영구적인 주택을 제공하는 접근방식이며, 지원서비스(Supportive Service)를 통해 노숙 등의 상태로 복귀를 방지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Housing First in Permanent Supportive Housing Brief(2014), HUD Exchange(www.hudexchange.info))



자료 : 2017 지원주택 국제심포지엄, “서울의 지원주택 공급사례와 제도화 방안”(남원석) 발표자료

- 서울시의 경우 '12년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발표하며 지원주택에 대한 연차별 공급계획을 수립하였고, '16년에는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시행해오며 현재 46호(51명 거주)를 운영 중에 있음³⁾ (서울시 시범사업은 붙임 2 참조).
- 이 조례안은 국내 최초로 지원주택을 제도화하여 주거취약자에게 안정적 주거를 제공함과 동시에 주거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주거복지정책을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음.

3) 서울시는 2012년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표하며 최초로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실시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수립에 관한 연구」(2012)를 진행하며 지원주택 제도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되었음. 국토교통부는 2013년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재가복지서비스와 주택이 결합된 서포티브 하우스를 도입하여 자립생활 기반 마련” 정책을 발표한바 있음.

□ 조례안 주요내용

- 이 조례안은 총 4개 장, 19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첫째, 지원주택 및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둘째, 지원주택 입주대상자의 선정 및 지원, 지원주택 제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명시함(안 제3조 및 제4조)

셋째, 5년 단위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 및 기본계획 포함내용 규정(안 제6조)

넷째, 지원주택의 공급 및 편의시설 설치, 제공기관 선정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제9조)

다섯째,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 위촉해제 등을 규정함(안 제12조~제16조)

□ 검토사항

가. 지원주택 및 입주대상자, 주거유지지원서비스(안 제2조 및 제3조)

- “지원주택⁴⁾”을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지원서비스”를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

4) “지원주택”은 미국 등 해외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Supportive Housing”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며, 학술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념임. : 남기철(“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쟁점”, 2012, 비판사회정책(34), 2012.2, pp.5~45.), 서종균(“지원주택 도입과 확대를 위한 검토”, 2013, 「도시와빈곤」 제104호, pp.73~97.)

하면서 학계의 연구결과⁵⁾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됨.

- 입주대상자를 “65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규정하고, 지원서비스에는 국내외 사례를 참조하여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입주자별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등으로 규정함.(붙임 2 참조)

- 다만 입주대상자의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므로 입주 및 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과 우선순위, 대기자 명부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나.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을 정하였는데, 이는 입주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지원서비스의 특성이 사회복지 영역을 비롯한 주거복지·주택관리 영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한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등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5) 남기철의 연구*에서는 지원주택을 “지역사회 주거생활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주택을 제공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서종균의 연구**에서는 “주거와 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 남원석의 연구***에서는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주택으로서 주택과 생활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택”으로 정의되고 있음.

* 남기철, “노숙인 지원주택 프로그램의 쟁점”, 2012, 비판사회정책(34), 2012.2, p.9.

** 서종균, “지원주택 도입과 확대를 위한 검토”, 2013, 「도시와빈곤」 제104호, p.73.

*** 남원석, “저소득가구 주거소요에 민감한 구조 갖추고 주거재생 확대하는 주택정책으로 전환 필요”, 2017.5, 서울연구원, p.13.

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안 제6조)

- 시장에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하고,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정하여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의 체계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서울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원주택의 체계적인 공급계획 수립과 지원서비스 운용방안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 지원주택의 공급 및 운영 등 업무를 주택건축국에서 총괄토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지원서비스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서울시 관계부서별 사업시행 및 예산배정·집행 등 절차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 하겠음.

라. 지원주택의 공급(안 제7조)

- 시장이 지원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을 「공공주택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6)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정함.

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및 업무처리지침 등 규정에 따라 시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재량으로 입주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점(붙임 4 참고)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지원주택 제도 시행초기의 안정적인 공급물량확보와 양호한 주거환경의 제공, 신규 건설·공급비용의 절약 등을 통해 이 제도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의 사업주체 중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은 이 조례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 될 수 있다는 점과 대체적으로 이들 주택 내부에 커뮤니티 공간이나 공동체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주택 공급대상자 선정의 적정성과 입주자들의 정보교환 및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짐.

마. 편의시설의 설치 등(안 제8조)

- 지원주택 공급 시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을 장려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원주택으로 활용되는 기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급계획 수립시부터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7.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저소득 서민에게 전대(轉貸)하는 공공임대주택

것과 달리 기존주택매입임대이나 전세임대주택은 대부분 그렇지 못하여 지원주택으로 활용키 위해서는 사후 설치가 필수적인 상황임.

- 다만 기존주택의 경우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이거나, 설치에 필요한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매입대상과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임.

바.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안 제12조~제14조)

- 시장은 “지원주택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입주자 선정기준 및 제공기관 선정방법”, “지원서비스 유형결정·제공방안”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운영위원회는 총 25~30명 이하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는 5~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정되도록 하여 수권기능을 부여하였음.
- 이는 지원주택의 입주대상자인 “65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별로 담당부서가 상이한 조직현황(본지본부 내 각 부서)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며, 필요시 담당부서별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됨.

□ 종합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지원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취약자의 주거안정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서비스 공급의 기초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과 시의성이 인정됨.
 - 다만, 상위법령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세부실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으며, 국토부 및 보건복지부와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대해서도 긴밀한 논의구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음.
- 끝으로 이 조례제정과 함께 관계부서⁷⁾의 협의 등을 거쳐 세부실행방안을 정함에 있어 주의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지원서비스의 제공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현재 지원주택 입주대상자의 범위는 다소 광범위하므로, 지원주택공급 및 지원서비스의 지원대상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과 우선순위 또는 대기자 명부 등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둘째, 현재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한 “공동생활가정”제도를 활용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1인 1실 사용 및 거실·화장실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지원주택으로 운용되고 있음.

다만, “공동생활가정”은 국토부의 업무처리지침 상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만 공급되고 있어, 현재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자치구별 편중 현상과 혐오 또는 기피시설로의 인식을 극복할

7) 주택정책과(주택건축국), 어르신복지과(복지본부), 장애인복지과(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복지본부), 자활지원과(복지본부), 보건의료정책과(시민건강국), 서울주택도시공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음.

셋째, 매입임대주택 또는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지원주택을 공급할 경우, 지역별로 산재되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입주자의 관리가 용이하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지원주택 입주대상자의 특성 및 지원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주택유형과 공급지역을 사전에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

넷째,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경우 지원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지원주택 외부의 장소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으며,

다섯째, 내실 있는 지원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관계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함께 예산확보 및 확실한 사업시행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육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주택”이란 주거유지지원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2.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지원주택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란 지원주택을 활용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 및 지원) ①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선정기준과 절차, 우선순위 등 관련규정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1.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노숙인 등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
5.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람

② 시장·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입주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 등 및 지원서비스제공기관(이하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입주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이하 “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한다.

1.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2. 주택시설관리 지원
3.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5.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6.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7.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제4조(제공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공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3.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제공기관은 시장 등으로부터 공공임대주택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경우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시장 등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2장 지원주택 공급 등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지원주택 공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주택의 건설 및 공급,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원주택의 공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3. 지원서비스의 제공방안

4. 편의시설 및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주택의 원활한 공급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방향 등을 정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주택의 공급)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3호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4.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
5.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동체주택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 등은 지원주택 공급 시 입주대상자의 신체적 특성 등 특별한 소요를 반영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지원주택의 내·외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지원주택의 운영 및 관리

제9조(제공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제공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서울주택도시공사
5. 그 밖에 시장이 지원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주택의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제공기관의 선정 및 운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보고) ① 제공기관은 제4조에 따라 경비 및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업 착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공기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실적을 연 2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업결과보고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한 때
2.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3. 사업의 중단 또는 폐지 결정이 있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결과보고서를 요구할 경우

③ 제2항의 사업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운영현황 및 실적
2. 경비 등 집행 및 정산 내역
3. 자체 평가결과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공기관의 운영 및 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기관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제공기관의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령이나 지원조건 위반, 신청 내용의 허위 등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제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의 취소나 철회, 지원의 보류 또는 중단, 이미 지급된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재정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3. 사업 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주택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지원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공기관은 비용의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예금이자 등이 발생할 경우

반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지원주택 운영위원회 등

제12조(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지원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2. 입주자 선정기준
3. 제공기관의 선정방법
4. 지원서비스의 유형결정 및 제공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명 이상 위촉하여야하고,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서울시 주택정책 및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각 1인
2. 사회복지관련 법인에서 임·직원 또는 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주거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직원 또는 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학, 도시계획학, 부동산학 등 건축·주택·복지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거복지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촉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재위촉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

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⑩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

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
3. 심의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해충돌 상황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 등은 지원주택의 원활한 공급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연구소, 학회 등 학술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교육·홍보) 시장 등은 지원주택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